

제277회 임시회  
2009. 1. 23(금)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 23(금)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영복 의원의외 7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1월 5일
- 회부일자 : 2009년 1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2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관련 법의 조문명확화(안 제1조)
- 2) 기금의 일부 관리 주체 현실화 및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
- 3) 지원 기금운용 관련 일부 자구 수정(안 제4조)
- 4) 위원회 구성 명확화, 위촉직 위원의 추천 주체 및 추천인원수 명확화(안 제5조)
- 5)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직위 명칭변경(안 제5조, 안 제13조)
- 6) 기금관리 계획 및 결산주체의 명확화(안 제11조, 안 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

### (산업경제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었으며, 동 조례의 개정안은 그동안 운용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함.
- 다만, 개정될 조례안이 향후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 후단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을 “제10조제2항의 수익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장, 농산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원장 추천 6명 이내,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충청북도 농정국장 추천 2명 이내, 충청북도의회 추천 2명 이내

제5조제4항 중 “농업진흥과 업무담당팀장”을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잔입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원장은”을 “농업기술원장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술지원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원장은”을 “농업기술원장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농촌진흥법」</u> ..... <u>규정에 따른</u>                      .....                      .....                      .....                      .....</p>
<p>제2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4-H연합회,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사단법인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p>	<p>제2조(기금의용도) .....                      .....  <u>규정에 따른</u> .....                      .....                      .....                      .....                      .....                      .....</p>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 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한다.</p>	<p><b>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b>  <b>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b>  <b>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b></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생략  1. (생략)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제10조제3항 후단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②(생략)  1.~ 2. (생략)  3.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다만,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충청북도 4-H후원회로 한다.</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b>제10조제3항의 수익금</b>  ②(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b>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b></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한다.  ③(생략)</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  <b>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 한다.</b>  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장, 제2조에서 정한 단체의 단체별 회장.</p>	<p>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장, 농산지원과장</p>
<p>2.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p>	<p>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원장 추천 6명 이내,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충청북도 농정국장 추천 2명 이내, 충청북도의회 추천 2명 이내</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생략)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 ..... ..... ..... <b>규정에 따라</b> ..... .....</p>

현행	개정안
<p>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u>농업기술원장은</u> .....</p> <p>.....</p> <p>②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p> <p>.....</p>
<p>제13조(회계관리) ①(생략)</p> <p>②기금운용관은 <u>기술보급부장으로</u> 하고, 기금출납원은 <u>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u>으로 한다. 다만, 충청북도생활개선회 기금은 <u>생활기술과 담당업무 팀장</u>으로 한다.</p>	<p>제13조(회계관리) ①( <del>현행과 같음</del> )</p> <p>②기금운용관은 <u>기술지원부장으로</u> 하고, 기금출납원은 <u>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u>으로 한다.</p>
<p>제14조(기금결산) ①원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기금결산) ①<u>농업기술원장은</u> .....</p> <p>.....</p> <p>.....</p>

## 관 계 법 령 발 취

###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농촌진흥법

제2조 (사업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잠업, 버섯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치,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 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